	5	! 결	답인	<u>.</u>	수입	배낭근	남액 소	성당	세서	(省)		
※ 뒤쪽의 작성병	방법을 읽고 ⊤	작성	하시기 년	바랍니	<u> </u>							(앞쪽)
연결사업연도				모법인명				사업자등	등록번호	-		
1. 연결법인	으로부터	지급	라받은 =	수입	배당금	익금불산	입					
배당금 지급받은 연결법인				E	배당금 지급	연결법인		(5			6	
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					は인명 	④사업자등	등록번호	배당받은 금액 연결 전 익금불산입액				
			<u> </u>	탈 7	계	겨						
						- "						
						-11						
						겨						
						겨						
		10	= H = I	TI -	7 HLO	ᄉᄭᅦᄗ	7 01 7 11 4	101 -	را ا			
2. 연결법인 가. 수입배							하 익금물인	한입 소성	9			
-	1			걸ㅜ		계인		10017	₩01 ¬			
배당금 지급법인 ⑦법인명		년결법			⑪ 출자	① 배당금액	③연결 전 익금 불산입액	⑪익금 불산입 률 (%)	⑤익금 불산입 대상 (⑫×⑭)	16익금 불산입 배제 대상	⑪익금 불산입액	①8익금 불산입
<u> </u>	 법인민	1	⑩ 사업자	<u> </u>	비율 (%)						(15-16)	개별귀속
WALAUTE T		계			(70)			(70)	(() () ()	-110		
		 계										
		계										
		711										
		계										
 나. 연결법	⊥ !이변 수여	ı III i	니 라크 이	구부	L 본사이	· 조전애	1					
		3 "11 3				- 0∃						
⑩연결법인명	합계											
⑩사업자번호 ⑩여겨 저 이												
② 연결 전 익 금불산입액												
		I		1		1						

작성 방법

- 1. ①법인명 및 ②사업자등록번호란: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은 연결법인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- 2. ③범인명 및 ④사업자등록번호란: 다른 연결범인에 배당금을 지급한 연결범인의 범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- 3. ⑤배당받은 금액란: 배당금을 지급받은 연결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한 연결법인으로부터 해당사업연도에 배당받은 금액을 적습니다.
- 4. ⑥연결 전 익금불산입액 및 ⑬연결 전 익금불산입액란: 각 연결법인별로 「법인세법」 제18조의2에 따라 익금에 불산입한 수입배당금액을 적습니다.
- 5. ①법인명 및 ⑧사업자번호란: 연결법인에 배당금을 지급한 법인(연결법인이 아닌 법인)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
- 6. ⑫배당금액란: 연결법인이 배당금 지급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액을 적습니다.
- 7. ⑭익금불산입률란: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.
 - 가. 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6조에 따라 구 「법인세법」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적용받는 경우
 - 구 「법인세법」 제18조의2에 따른 수입배당금

배당금 지급법인	출자비율	익금불산입비율				
	. —					
	100%	100%				
주권상장법인	30% 이상 100% 미만	50%				
	30% 미만	30%				
	100%	100%				
기타법인	50% 이상 100% 미만	50%				
	50% 미만	30%				

- 구 「법인세법」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

1 42 443 445 15 4 12 14 404								
배당금 지급법인	'19.1.1. 이후 최초	배당분	'20.1.1. 이후 최초배당분					
	지분비율	익금불산입비율	지분비율	익금불산입비율				
주권상장법인	40% 초과	100%	40% 이상	100%				
	30% 초과 40% 이하	90%	30% 이상 40% 미만	90%				
	30% 이하	80%	30% 미만	80%				
기타법인	80% 초과	100%	80% 이상	100%				
	50% 초과 80% 이하 (벤처기업: 50% 초과 80% 이 하)	90%	50% 이상 80% 미만 (벤처기업: 50% 이상 80% 미만)	90%				
	50% 이하 (벤처기업: 20% 이상 50% 이 하)	80%	50% 미만 (벤처기업: 20% 이상 50% 미만)	80%				

나. 「법인세법」 제18조의2를 적용받는 경우

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	익금불산입비율				
50% 이상	100%				
20% 이상 50% 미만	80%				
20% 미만	30%				

- 8. (li)이금불산입배제대상란: "연결법인 수입배당금 조정명세서(을)[별지 제76호의14서식(을)]"의 20이금불산입배제금액을 적습니다.
- 9. (18의금불산입개별귀속란: ① 의금불산입액이 ⑪출자비율 전체의 합계액에서 해당 연결법인의 출자비율이 차지하는 비율(① ×⑪출자비율란의 연결법인별 출자비율÷⑪출자비율 계)에 따라 해당 연결법인에 배분한 금액을 적습니다.
- 10. ② 연결 전 익금불산입액: 각 연결법인별로 ⑩연결 전 익금불산입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.
- 11. ②인금불산입개별귀속액라: 각 연결법인별로 ③임익금불산입개별귀속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.
- ※ 근거법조항 중 "구"는 「법인세법」(2022. 12. 31.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에 따른 조항을 의미합니다.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	연결법인		배당i	금액	조정	명세서((을)	(앞쪽)	
연결사업연도	할도 극용에서가 미	모법인	명			사업자등록	번호	(エコ)	
1. 차입금의 이	자 계산		1						
					 차입	금의 이자			
①연결법인명	②사업자 등록번 호	③연결법인간 거 래액 제거전		④연결법인간 거 래액		⑤부당행위계산 적 용대상		6연결법인간 거래 제거후(③-④+5)	
2. 연결법인 자·	산총액의 계산								
⑦연결법인명 ⑧사업자등		릒번 <i>호</i>	⑨재무상터 기말 자신				금 등 ①연결법인간 거래액 제 = 자산 거후 자산총액(⑨-⑩)		
	계								
3. 연결법인이 ·	출자한 법인에	 대한 주	식등의	장부기	 액				
 배당금 지급	법인(출자법인)				연결법인				
⑩법인명	① 사업자등록t	번호	19법	인명		¹⁵ 사업자등록	번호	식등의 장부가액	
					계				
					계				
					 계				
4. 지급이자 관	련 익금 불산입	배제금	·액						
배당금 지	급법인(출자법인)		(19배당금	금을 지급받	<u></u> 는은	1 20억	 금불산입배제금액	
⑪법인명	®사업자등 [‡]		연	결법인의	의 익금불신	<u></u> 입률		6×(6÷(1)×(9)	
		합 계							

작성 방법

- 1. ①연결법인명 및 ②사업자등록번호란 :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전체 연결법인(배당금을 지급받지 않은 연결법인을 포함) 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.
- 2. ③연결법인간 거래액 제거전란 : 각 연결법인의 차입금 이자 총액을 적습니다.
- 3. ④연결법인간 거래액란 : 다른 연결법인에게 지급한 차입금이자의 합계액을 적습니다.
- 4. ⑤부당행위계산 적용대상란 : 다른 연결법인에게 지급한 차입금이자 중「법인세법」제52조 제1항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차입금이자를 적습니다.
- 5. ⑦연결법인명 및 ⑧사업자등록번호란 :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전체 연결법인(배당금을 지급받지 않은 연결법인을 포함) 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.
- 6. ⑨재무상태표상 기말자산 총액란 : 각 연결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을 적습니다.
- 7. ⑩연결법인에 대한 대여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란 : 연결법인에 대한 대여금·매출채권 및 연결법인의 주식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(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제60조의4)의 합계액을 적습니다.
- 8. ⑫·⑭법인명 및 ⑯·⑯사업자등록번호란:"연결법인 수입배당금액 조정명세서(갑)[별지 제76호의14서식(갑)]"의 ⑦·⑨법인 명 및 ⑧·⑩사업자번호와 일치합니다.
- 9. ①법인명 및 ⑱사업자등록번호란 : 배당금지급법인(출자법인)별로 각각 ⑫법인명 및 ⑱사업자등록번호와 일치합니다.
- 10. ⑭배당금을 지급받은 연결법인의 익금불산입률: "연결법인 수입배당금 조정명세서(갑)[별지 제76호의14서식(갑)]"의 ⑭익 금불산입률 계란의 비율과 일치합니다.